

National R&D Innovation Act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2021.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1. 개요	1
2. 적용범위	3
3.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의 검토기준	4
4. 승인 신청 받는 중앙행정기관 등	5
5. 신청방법	6
6. 지식재산권 포기 전 양도 검토	8

〈부록〉

[부록1]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의 신청양식 예시	9
[부록2]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처기재 개요	10
[부록3] 국가연구개발성과 기여율의 개념	11
[부록4] 지식재산권 포기 관련 Q&A	12

1. 개요

1) 매뉴얼의 발간 목적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검토기준과 승인기관,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였지만, 기술실시계약의 미체결 등으로 인해 해당 지식재산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포기 승인을 신청할 때 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포기 승인을 신청한 국내·외 출원·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해 법적 요건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업무에 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음

2) 용어정의

■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혁신법 제2조제2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개발과제의 단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지칭하는 최소의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의 최소단위인 세부과제를 의미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입력단위]

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대상사업	조사 · 분석단위				
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과제	위탁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R&D)	차세대응용 오믹스사업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및 지카 바이러스 중화 치료용 항체 개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및 지카 바이러스 중화항체의 특성분석	A용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효율 48V DCDC 컨버터 IC 개발	소아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중간엽 줄기세포 재생치료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쟁력 기반구축	미래성장동력	소재부품산업미래 성장동력(R&D)	자세대반도체개발	A용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효율 48V DCDC 컨버터 IC 개발	소아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중간엽 줄기세포 재생치료제 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연구개발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소아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중간엽 줄기세포 재생치료제 개발	소아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중간엽 줄기세포 재생치료제 개발				
36개 부·처·청·위원회 (다부처 포함) (2019년 기준)			847개 사업 (2019년 기준)			70,327개 세부과제 (2019년 기준)				
						6,640개 위탁과제 (2019년 기준)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함)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혁신법 시행령 제 34조제1항)
-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혁신법 제2조제4호)
-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과 기술료,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3)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후 비교

구분	종전 (공동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록·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등록, 포기 시 증빙서류 제출, 포기 시 소멸일 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6항) • 기술료 징수 등을 완료한 경우 참여·실시기업, 다른 기관에 양여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시행령 제34조 제4항)
성과의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 권리 포기 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양여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5항) •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기관에 양도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 우선 검토 (시행령 제34조 제4항)

2.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가 승인 신청대상임
- 출원하기 이전의 단계는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 직무발명 등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포기는 혁신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따름
- 공동명의로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공유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두절 등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 공동명의로 출원한 기관 간 별도의 협약을 통해 출원, 등록, 유지, 비용부담 등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관리 권한이 있는 대표기관이 포기 신청
- 단, 공동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를 포기하더라도 공유자인 주관연구기관이 유지하는 경우는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 전용·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의 신청 가능. 단 실시기간의 종료 및 추가 실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부터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가 실시되는 등 이미활용 된 점, 승인 신청 의무는 혁신법 상의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부과되는 의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동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음

2) 적용시점

- 혁신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이전에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재원구분

- 포기 승인 대상인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국내·외 출원·등록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국내 민간이나 해외 등의 자금지원을 받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지원에 정부와 민간의 재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국가연구개발성과에 해당된다면 경우 포기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3.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의 검토기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중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 사업관리기관(이하 ‘전문기관 등’)에게 포기 승인 신청
-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등록특허나 기술이 쇠퇴되었거나 낙후된 등록특허, 사업성이 부족하여 권리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록특허 등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포기 승인 신청
- 공동권리자가 소유권의 유지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나 공동권리자가 폐업·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승인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포기 승인 필요
- 출원 심사과정에서 거절결정으로 인해 등록이 포기된 출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포기 승인 신청 불필요
- 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에 지식재산권의 출원 이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포기 승인 신청

4. 승인 신청 받는 중앙행정기관 등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등에서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혁신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유관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관리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관련 업무를 처리 가능
-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타 중앙부처의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 예) 관세청(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한국연구재단]), 해양경찰청(해양경찰현장맞춤형연구개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포기 승인 신청 가능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현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농촌진흥청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5. 신청방법

1) 신청양식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 신청하려는 경우 [부록1]을 참고 및 활용 가능
 - [부록1] 양식은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방식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시 [부록1]을 토대로 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로도 처리 가능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부록1]에 따라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포기 승인 신청 시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¹⁾
 -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 내부 특허발명자(연구자)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을 통한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또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여 해당 출처를 기재하여야 함
 - 위의 문의들을 통해서도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세부사업 등을 식별하기 어려워 출처기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입력정보, 지식재산권의 성격, 내용, 연구비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

2) 신청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하려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소멸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하고, 소멸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에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의 3년 이내 심사청구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출원의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음

1) 출처기재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특허를 출원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정보 기록(사사표기, Acknowledgement)을 말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참조

● 등록된 지식재산권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포기하려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²⁾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포기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은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검토하고 회신하여야 함

3)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창출된 경우에는 그 중 기여율이 가장 큰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기여율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서 맨 처음 우선 출처기재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
 - 아래와 같이 A 지식재산권은 기여율이 가장 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지식재산권은 맨 처음 출처로 기재된 산업통상자원부에 포기 승인 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기여율이 존재하는 연구개발과제(예시)〉

지식재산권	부처	연구개발과제명	기여율	처리기관
A	국토교통부	a	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관 사업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	0.7	
B	산업통상자원부	c	0.5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소관 사업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d	0.5	

- 만일 B 지식재산권이 공동명의라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 등) 간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상호 간 합의한 경우에만 사업 주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해당 지식재산권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오거나 기관 간 별도 협약에 의한 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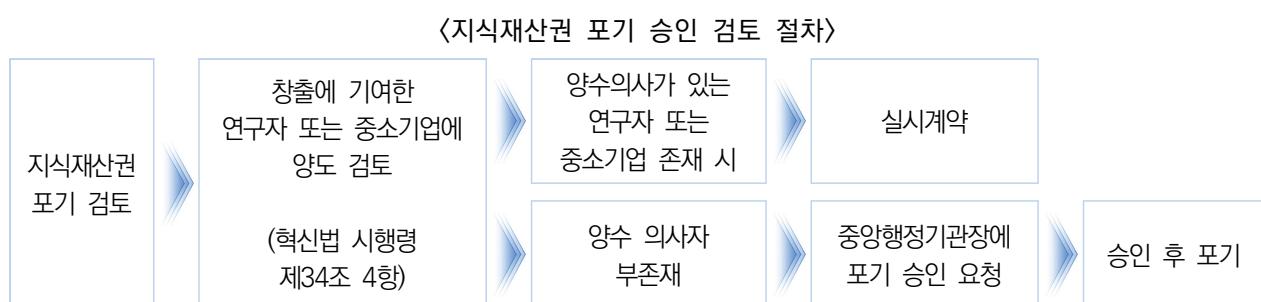
2) 특허법 상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관한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유지됨. 이 6개월의 연차료 추가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연차료의 만료기간 다음날로 소급해서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소멸됨

4) 포기 승인 신청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 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은 지식재산권의 [부록1]의 포기 승인 신청 절차항목 등을 참고하여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은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에 대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공문 등을 통해 검토결과 승인의 여부 등을 안내
 - ※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에 관한 신청 결과의 안내는 추후 검토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

6. 지식재산권 포기 전 양도 검토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기 이전에 양도를 검토하여야 함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 ※ 포기 승인 신청은 양도 및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내부의 검토가 끝난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양도 또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은 승인 대상이 아님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양수의사가 있는 연구자나 중소기업이 존재할 경우 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양도계약을 체결
 - 이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필요 시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예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보유, 양수인은 국내기업에 대해 해당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양도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사전 협의 등
 - 양도 검토 시 연구자와 중소기업 간에 별도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음
- 양수인 또는 양수기관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포기 승인을 신청



부록1**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의 신청양식 예시****1.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연구개발과제**

발명의 명칭			
출원인 (특허권자)			발명자
출원 국가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과제고유번호 (NTIS)	중앙부처명		관리기관명 (전문기관 등)
연구사업명 (기여율)	주관연구기관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연구기간

※ 포기를 신청하려는 지식재산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등의 전자파일 형태로도 처리 가능

2.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체크 리스트)	해당 여부 (✓ 표시)	
1	• 기술성과 사업성 등이 낮아서 향후에도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2	• 포기하더라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3	• 법령과 연구과제협약서 등에 의해 포기의 제한이 없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4	• 제3자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5	• 기술수명주기(Life Cycle)가 쇠퇴되었거나 낙후된 지식재산권 * ex) 특허의 등록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특허 건을 양도·포기가 가능으로 특허로 분류(최초 등록시점 기준으로 3년 경과 이후에는 기술이전율이 현저히 급감함을 고려)	예	아니오
6	•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가능성을 검토 결과 양수의사자나 기관이 없는 등 양도가 불가한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7	• (해당 시에만 체크) 공동권리자 모두가 포기를 동의한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8	• (해당 시에만 체크) 공동권리자가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예	아니오

※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연구개발소유성과기관의 장이 상기 점검항목의 해당 여부(✓) 표시

상기 지식재산권의 포기와 관련된 점검항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 해당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 귀하

(사업 관리기관(전문기관)장 귀하)

부록2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처기재 개요

■ 출처기재의 의미와 근거

- (의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국내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허출원서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기록을 말함
- (근거)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 출원 시 출처기재의 입력이 의무화 되었으며,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명시
 - *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 출처기재의 반영절차

- 특허청의 출처기재 특허 성과는 NTIS에서 [miss_pat_○○○]의 세부성과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며 다음의 과정을 통해 특허성과로 인정됨(그림의 ②번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



※ 참고: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의 과제정보 기재 항목

항목명	설명	비고
과제고유 번호	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	부처코드 3자리 + 과제일련번호 7자리 예) 1710012345
중앙부처명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의 기획·평가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명칭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문기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	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사업명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	예) 0000기술개발 등
연구과제명	각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 과제 단위로서 해당 특허가 창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	세부과제(연구개발과제)명 입력
기여율	복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하나의 특허성과가 창출된 경우 각 개별 과제의 기여도	특허성과 1건당 각 기여율의 합은 10이 되도록 함
주관연구기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명	예) 00회사, 00대학교 등
연구기간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	-

* 자세한 설명은 정부R&D특허성과관리시스템(<https://www.rndip.or.kr>)의 연구개발과제 출처기재 홍보영상 참조

부록3**국가연구개발성과 기여율의 개념****■ 국가연구개발성과 기여율의 개념과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기여율: 하나의 연구성과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창출된 경우 해당 연구성과에서 차지하는 기여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에서는 중복입력된 연구성과에 대해 기여율을 조정해서 중앙부처별 연구성과의 통계를 산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기여율의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항목인 SCIE(비)SCIE 논문과 국내·외 출원·등록특허, 기술료, 사업화 4개 항목

■ 국가연구개발성과 기여율의 조정

- ① 한 개의 성과가 동일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복 입력되었을 경우

→ 1개 성과만 남기고 나머지 연구성과는 삭제

논문	부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부	라	○○○	1	1
	○○부	라	○○○	1	삭제

- ② 동일 부처 내 다른 과제에서 동일 연구성과가 중복 입력되었을 경우

→ 연구관리기관 사업담당자 주관 하에 연구책임자간 협의 후 기여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하여 재입력

논문	부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부	가	○○○	1	0.7
		나	○○○	1	0.3

- ③ 다른 부처의 다른 연구과제에서 동일 연구성과가 중복 입력되었을 경우

→ 사업담당자 간 협의 후 기여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하여 재입력

논문	부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부	a	○○○	1	0.3
		b	○○○	1	0.7

* 연구관리기관 사업담당자간 협의 후 각각 기여율을 0.3, 0.7로 기재

- ④ 한명의 연구책임자가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동일 연구성과를 중복 입력하였을 경우

→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별로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하여 합이 1이 되도록 결정하여 입력

논문	부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복지부	a	○○○	1	0.7
		b	○○○	1	0.3

부록4

지식재산권 포기 관련 Q&A

Q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거나 양도(유·무상 포함)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국내·외 출원·등록한 특허의 유상·무상양도는 특허출원을 포기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원인 변경, 특허권 이전을 통해 명의가 변경되므로 포기 승인 대상이 아님

Q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가지고, 공동연구기관은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과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사항을 정할 수가 있음. 이는 지식재산권 포기의 경우가 아니기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추진 가능

Q3. ‘포기’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표현이며, 실제로 포기하는 행위는 ① 연차료 미납을 통한 권리소멸, ② 기업에 대한 무상권리양도, ③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채납 등의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의 지식재산권 포기는 실제 발생하는 포기의 여러 형태 중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의 포기란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로 특허출원의 포기, 특허권의 포기 등을 의미함. 따라서 특허권의 권리가 존재하는 ② 기업에 대한 무상권리양도, ③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채납 등은 지식재산권 포기의 승인 신청 대상이 아님

Q4. 대학과 공공연의 경우에는 연간 특허의 포기 건수가 수백 건 이상일 수 있는데, 주관연구기관장(공동연구기관장 등)에게 포기 권한을 위임이 가능한가요?

-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장 등)에 특허의 포기 승인의 권한 위임은 현행 혁신법과 동법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없어 불가능함

Q5. 지식재산권의 포기 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따로 정한 기간이 있나요? 특히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의 신청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2021년 1월 1부터 인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지식재산권의 포기 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의무 보유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적용시기의 경과부칙이 없으므로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의 신청대상은 동법이 시행 이전에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도 적용대상임

Q6. 연구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 시 어느 주관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므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신청하면 됨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2021. 10.

National R&D Innovation Act

